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3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조례 제명변경 및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4조 수정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 조례안 제4조제5항 신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 조례안 제5조제2항제4호 수정
 - 양성평등기본법 명칭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 조례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수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제출 기한 및 심의사항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1건

- 제출의견 반영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업명 수정(안 제5조)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을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하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양성평등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라.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5.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1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

제16조제3호 중 “영 제1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9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활공동체당”을 “자활기업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5. (생략)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7.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업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4.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자활기업 -----

7.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사업 용도) ① ----

-----.

1. 자활기업이 -----

2. 자활기업 -----

3. 4. (현행과 같음)

②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략)

4. 여성발전사업

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사업의 지원

나.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다.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마.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

② -----

1. 3. (현행과 같음)

4. 양성평등사업

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나.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라.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마.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아.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동작업장 운영

5.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④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7.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삭 제>

<삭 제>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

5.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② (생
략)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
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
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② (현
행과 같음)

<삭 제>

제8조(기금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결산서와 함께 평창군의회
(이하"군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능) ① -----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
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 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17조(이차보전) ① (생략)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여받은 자금 금리의 15퍼센트 범위내에서 보전한다.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제5

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대여자금 신청 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제17조(이차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활기업이 -----

-----.

제19조(자금대여 및 상환) ① ---

----- 자활기업당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
연 락 처	(033)330-2150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생략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